

소방생활법률-3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생활법률에서는 일상 또는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함)
  -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소방대상물 중 위의 1. 과 2. 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함)
  -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라. 지하구
  -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의 1.에서 3. 까지의 규정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참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참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7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아목).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6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사목).

##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해서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5항 참조

◎ 위반 시 제재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 특례

◎ 안전관리자 등의 겸직 허용

-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소방시설물의 관계인이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

용신고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 동일한 “산업단지 등” 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 “산업단지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을 말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1항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1.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2. 유치지역 및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의2)
3.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4. 공동방지사설이 설치된 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5.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절차

● 선임 기간

- 소방안전관리자(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소방대상물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인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 선임 연기 사유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신청 서류 : 선임 연기 신청을 하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선임 연기에 따른 의무 : 선임 연기를 신청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고 의무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신고 서류 : 선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첨부하지 않음)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상기 법률 참조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첨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만 첨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해임 통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 해임 사실의 통지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라목).

◆ **관련판례**

판결표시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결표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 묻고 답하기

Q : 재래시장에 아케이드(일반철골구조 연면적 1,480.73㎡)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자탐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아케이드 설치전엔 소방시설 없었음) 기존 아케이드 설치 전에 해당 없었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A :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되어 연면적이 증가되고 현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Q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만약 A라는 회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가 퇴사하여 B라는 회사로 이직할 경우, A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지연되어 선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회사에 취업 및 자격증 선임이 가능한지?

A : A 회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가 퇴사하여 B라는 회사로 이직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며 B회사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며 A회사는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농공단지내에 어떤 회사가 인접한 2개의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3개의 회사는 지번이 모두 틀리지만 구획되지 않고 바로 인접하여 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은 통합수신반이나 통합펌프실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인수되기 전의 상태로 개별 경비실에서 소방시설 관리하여 소방시설이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A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의거 농공단지내 사업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면적의 합계가 4만제곱미터 이내의 3개이하 건축물에 1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해도 가능합니다.

## 신착자료 목록 (2013. 1월)

등록번호	주제명	언어	잡지명	출판년월
BB044659	한국의 통화정책	한글		201212
BB044790	Lif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한글		201112
BB044791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2011.12~2012.11)	한글		201212
BB044792	2012 한국의 손해보험	한글		201212
BB044793	손해보험판결례집	한글		201012
BB044794	손해보험판결례집	한글		201112
BB044795	2012 생명보험 성향조사	한글		201212
BB044802	금융안정연구	한글		201212
BB0448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규제체계 변화	한글		201212
BB044804	건설공사보험 실무지침서	한글		199904
BB044805	2012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영어	유해물질비상 대응핸드북	201201
JJ045066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역선택	한글	손해보험	201212
JJ045306	보험산업의 이익조정 연구: RBC비율을 중심으로	한글	보험학회지	201212
JJ045307	현대 주요국 보험법 개정동향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한글	보험학회지	201212
JJ045308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한글	보험학회지	201212
JJ045309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기술 개발	한글	KFI세상	201212
JJ045310	공기 압축포 혼합장치 개발	한글	KFI세상	201212
JJ045311	궁금합니다 Q&A	한글	KFI세상	201212
JJ045312	발전소 사고사례 분석	한글	위험과 보험	201201
JJ045313	사회경제적 허용위험을 고려한 전기설비의 위험기준 개발	한글	리스크관리연구	201209
JJ045314	쓰나미로 인한 화재시 소화활동 실태와 소화활동 곤란성에 관계된 연구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시	일어	일본화재학회 논문집	201212
JJ045315	발효에 의한 발열이 원인이 된 건축자재 잔해의 화재위험성에 대하여	일어	일본화재학회 논문집	201212
JJ045316	리튬이온 전지의 개략과 전기자동차 안전기술	일어	화재	201212
JJ045317	리튬이온 전지탑재차량의 화재시험	일어	화재	201212
JJ045318	연소거동으로 관찰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	일어	화재	201212
JJ045319	수소연료자동차의 화재안전향상을 위한 노력	일어	화재	201212
JJ045320	가스배관의 시공불량으로 인한 화재	일어	화재	201212
JJ045321	미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위원회 사고소견서	한글	가스안전	201301
JJ045322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를 위한 가스보일러 설계표준 사용시간 설정 연구	한글	가스안전	201301
JJ045323	가스안전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글	가스안전	201301
JJ045324	성능 기반 화재안전 선진화 연구	한글	건설Brief	201201

JJ045325	도시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도시.건축 계획지원 기술 개발	한글	건설Brief	201202
JJ045326	하천시설 관리의 정보화	한글	건설Brief	201208
JJ045327	국지성 홍수관리를 위한 소형강우레이더망활용에 대한 해외사례	한글	건설Brief	201208
JJ045328	인공위성을 이용한 광역강수량 추정자료 CMORPH 소개	한글	건설Brief	201208
JJ045329	인공위성을이용한홍수예측	한글	건설Brief	201208
JJ045330	기상청기상레이더센터레이더운영및기술개발현황	한글	건설Brief	201208
JJ045331	화재안전성능설계(Design)란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2	초고층건축물의화재성능설계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3	철근콘크리트부재의내화설계법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4	성능위주설계국내외동향및나아갈길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5	건축물외장재의수직화재확산성능평가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6	피난계단 연기제어 기술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7	불산가스의독성에관한연구	한글	건설Brief	201212
JJ045338	Sound City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39	Double act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40	High stakes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41	Tunnel effect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42	Making an impact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43	Tall order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44	Tactical gain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JJ045345	Smart detection	영어	fire risk management	201212
RR301058	화재원인 및 현상규명에 관한 화재 재현실험에 관한 연구 I	한글		201212
RR301059	미소화원의 화재위험성 및 감식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글		201212
RR301060	유사석유제품의 화재원인 감정 연구	한글		201212
RR301061	가연물에 따른 유류화재 증거물 방해물질 연구	한글		201212
RR301062	화학화재 감식,감정 기법 연구	한글		201212
RR301063	가연성 고체 위험성 평가 및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글		201212
RR301064	SEM을 활용한 전선도체 단락흔 화재원인 감정 연구	한글		201212
RR301065	화재현장 유해가스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글		201212
RR301066	화재패턴 DB 구축에 관한 연구	한글		201212
RR301067	화재원인 및 현상규명에 관한 화재 재현실험에 관한 연구 I	한글		201212
RR301068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예방 및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글	소방논문집	201212
RR301069	국민생명보호를 위한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글	소방논문집	201212

RR301070	피해저감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대비 초기대응대책	한글	소방논문집	201212
RR301071	가스계 소화설비의 개구부 보충량 추정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2	전역방출방식 CO2 소화설비의 설계농도 및 유지시간 검증을 위한 직접방사실험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3	접촉 불량에 의한 불꽃 및 직렬아크의 검출기법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4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피복용 경량 모르타의 온도이력 성장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5	화재 시뮬레이션(FDS)을 이용한 커튼월 구조의 화재 확산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6	유류화재 감식기법의 실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7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와 소방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고찰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8	오리피스의 직경에 따른 감압성능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79	10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폭발방지 및 하중지지력 향상방안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80	외벽 마감재료의 수직화재 확산 연구를 위한 실물화재 실험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81	일반재와 난연재 알루미늄복합패널의 수직화재 성장분석을 위한 실험(ISO 13785-2)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82	페타이어 분쇄물의 자연발화현상에 대한 재연실험 및 열분석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1212
RR301083	고온 발열체에 의한 유증기 폭발 위험성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84	국립현대미술관 화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85	아파트 화재의 산소결핍에 의한 사상자 사례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86	동식물성 유지류의 발화특성 및 슬롭오버 발생 메커니즘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87	전자레인지 발화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88	가연물성장 및 환경영향에 따른 연소패턴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89	형광램프 화재조사 사례(FPL 램프 중점)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90	화재사례와 풍속에 대한 담뱃불 발화실험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91	구획공간에서 열유동이 바닥재에 미치는 영향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92	한방약제 분체의 분진폭발 및 배관내 폭굉가능성 연구	한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01212
RR301093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재산 예상 피해액 산정방안 연구	한글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201212
RR301094	관광호텔의 화재손해 위험관리방안-화재발생현황과 대형화재사례 분석 중심	한글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201212
RR301095	목조한옥에 대한 저압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소화 성능에 관한 연구	한글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201212
RR301096	태양폭풍 영향 우주 및 육상시스템 피해에 관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현	한글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201212

## 판매도서 안내

할인을 안내	협회발간도서	번역발간도서
특별회원 (연회비15만원)	40%	20%
일반회원 (연회비 6만원)	20%	10%

(단위 : 원)

도 서 명	출판년도	보급가	일반회원	특별회원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제8판	2011	25,000	22,500	20,000
NFPA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핸드북 (2010판)	2011	200,000	180,000	160,000
NFPA921 화재·폭발 조사 가이드	2009	50,000	45,000	40,000
방재기술자료집II	1998	20,000	16,000	12,000
NFPA 가스계소화설비 기준	2008	20,000	18,000	16,000
NFPA 물분무·미분무수설비 기준	2008	16,000	14,400	12,800
NFPA 제연·공조설비 기준	2008	25,000	22,500	20,000
NFPA5000 건축물 구조 및 안전코드	2007	100,000	90,000	80,000
SFPE 방화공학 핸드북 제3판	2005	200,000	180,000	160,000
화재사례 10집	2003	10,000	8,000	6,000

✧ 인터넷 구입

홈페이지 [www.kfpa.or.kr](http://www.kfpa.or.kr)

「도서안내」코너에서 주문

✧ 전화 문의

고객서비스팀 TEL 02-3780-0313

FAX 02-3780-0329

✧ 입금 계좌 안내

외 환 은 행 061-13-40679-6

신 한 은 행 100-010-588138

농협중앙회 083-01-254221

국민은행 099-01-0265-494

〈예금주 : 한국화재보험협회〉